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The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 the Future

이 영 학(Young-Hak Lee)**

목 차

- | | |
|---------------------------------|---------------------|
| 1. 머리말 | 4.2 기록의 활용과 거버넌스 |
| 2. 기록관리와 거버넌스 | 5.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 |
|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 | 6. 기록물관리기관의 활성화 |
| 4. 기록의 수집과 활용 |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
| 4.1 기록의 기획 수집과 국가지정기록
제도의 활용 | 8. 맺음말 |

<초 록>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발전해가야 한다.

주제어: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ABSTRACT>

In 1999,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records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ut the level of records management is still low in reality. This article is to present suggestions in policy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o flourish national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policy propulsion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politically neutral and independent. In addi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wide-spread, many different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archives should have archivists. Not only that, managers of archives need to cooperate and thrive with autonomy,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and solidarity.

Keywords: records management, governance, records management system, archives, archivist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글은 2009년 11월 27일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youhlee@hanmail.net)

■ 접수일자 2009년 12월 20일 ■ 수정일자 2009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23일

1. 머리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 현대의 기록관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시기(1948~1969년)는 초기에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계승하다가 196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록관리제도를 세운 시기이다(이상훈 2009; 이승일 2007). 제2시기(1969~1999년)는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행정부의 기록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려는 시기이다. 제3시기(1999~현재)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려는 시기이다(이영학 외 2006).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록관리는 많이 진전되었다. 공공기록 관리제도는 체계화되고,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2004년에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등 세 기구가 추진주체가 되면서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국가기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국가기록관리를 주도하게 되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0여 곳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전담하게 되면서 기록관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앙부처에 기록관을 설립하고, 그곳에 기록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황기

록을 파악하고, 이관받은 전자기록을 관리하며 기록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16개 광역시·도에 2008년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기록관리팀이 추진주체로 나서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록관 설립이 모색되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기록관리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이 지방기록관리로 확산되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형성되고 그 성격도 지방의 특성에 따라 새로워질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기록원과 중앙부처의 기록관리가 발전해왔는데, 앞으로 지방기록관이 발전해갈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록관의 영역도 확대되어 갈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종교단체·대학·시민단체 등 민간기구의 기록관리가 진전되고, 미술·영상·영화·과학기술·의료·정당 등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즈(Archives) 설립이 시도될 것이다(곽건홍 2009).

지난 10년 동안 기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시기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관리 활동을 평가한 후, 새로운 기록관리의 방향을 모색해 볼 시기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기록관리 방향을 제시해본다.

2. 기록관리와 거버넌스

한국사회는 힘들지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

가고 있다. 민주주의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민간 전문가·시민단체·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한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 집행 행위를 ‘거버넌스(Governance)’라 부른다. 민주정부는 정책의 추진 방법을 ‘거버넌스’로 구현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한 정의를 살펴보자.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할 때 다른 주체들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다(Lipchak 2002).

즉 거버넌스란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독재의 시기에는 공공기록이 잘 관리되지 못하였다. 독재정권은 공공기록을 무작위로 폐기하였으며, 공공기록을 잘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공공기록을 남기었다가는, 그것이 그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을 생산하였더라도, 후에 기록을 폐기하거나 혹은 이직할 때나 퇴임할 때 기록을 사적으로 가져나가기도 하였다.

공공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정부를 만들어준다. 기록관리란 관료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일선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지만, 바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

해서 관료사회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오항녕 2005, 37).

미래사회의 기록관리는 거버넌스로 실현된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시민단체·국민들이 모두 기록관리에 참여한다.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일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정부 활동을 이해하고 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거버넌스의 한 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폭넓고 신속하게 하여 국민의 역사지식역량을 강화시키고, 연구자와 국민들은 그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인지하면서 신뢰하게 된다.

미래 사회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종이·필름·비디오·사진·이메일·전자기록 등 표현 매체가 다양화하고 IT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는 정책 집행이나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다양한 매체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기록관리는 필수가 되었다.

앞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구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기업·대학·종교단체·영화·미술·음악·병원·과학기술·정당·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카이브즈(Archives)들이 설립되고, 그 기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각 분야의 기록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곽건홍 2009). 각 분야의 아카이브즈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서로 연대와 협조를 이루어간다면 국가지식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의 기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록물관리기관이다.¹⁾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현재 국가기록원이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어야 한다.

1969년에 정부기록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는 2005년에 국가기록원으로 격상되었고, 인원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국가기록원은 외형적 성장으로부터 내실을 기할 단계이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행정부와는 독립하여 국가기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때, 정책 수립이나 추진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더욱 정치적 중립

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이관받거나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여건과 근무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연구사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심화시켜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록청(NARA)에서는 아키비스트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유지하면서 전문지식을 키우고 단계를 거치면서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작년(2008)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기록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기록관리비서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곽건홍 2009, 8-10).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중요 기록과 대통령기록의 이관 및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으로 있는 한, 국가기록관리를 매우 불안정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장은 수시로 바뀌며,²⁾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에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를 평가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비밀기록을 총괄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을 통괄하기에는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불안정하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이관받아 공개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제9조.

2)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국가기록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1999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명의 원장이 바뀌었다).

하는 대통령기록관을 통괄하는 위치로는 더욱 부적절하다.³⁾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역사 기록위원회 혹은 국가기록청이라는 위상으로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국가 기록관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만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이그러질 때는 비판하는 자세를 공유해야 국가기록관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현 법률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다(곽건홍 2006, 20).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등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와 민간분야 기록관리 전문가가 모여 국가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협의 모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이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집행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는 일방적인 정책의 집행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료·민간전문가·시민단체·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관료뿐 아니라 민간전문가·국민들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제도화가 정착되고,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하의 대통령 기록은 당시의 역사상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정보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는 일은 국가지식역량을 제고시키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의 정비와 제도 정비는 기록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첩경이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전자기록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같은 해에 "대통령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대통령기록의 생산·보존·관리·활용을 한 단계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밀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는데, 그 부분을 체계화하는 법률 제정도 필요한 일이다. 나아가 기록관리 거버넌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감으로써 법률에 정해진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 기록물관리 표준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3) 2008년에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에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을 잡고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일이 있다.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제15조.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록의 수집과 활용

4.1 기록의 기획 수집과 국가지정기록제도의 활용

20세기 전반의 한국사는 굴곡진 역사적 흐름을 겪어왔다. 일제시기에는 한민족이 국가를 스스로 운영해가지 못하였고, 해방 이후는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좌우대립으로 인하여 공공기록이 많이 훼손되거나 보존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는 정립되지 못하였다. 기록관리 전담기구도 없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공공기록의 보존기간 설정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중요 공공기록은 다수 폐기되거나 파기되었다(곽건홍 2006, 20).

정부의 공공기록 관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였다. 1962년, 1968년, 1975년에 '대대적인 문서정리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성립한 군사정부는 1962년에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의 간소화를 주창하면서 일제시기 이래 전해 내려왔던 행정기록을 대거 폐기·정리하였다. 이것은 기록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리함으로써 일제시기 이래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을 폐기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다(이경용 2002).

1969년에 설립된 정부기록보존소가 2005년

에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였고, 그에 맞게 기록정보서비스를 강화해가는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이 튼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기록의 질이 높아서 연구자와 국민들이 자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중요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소장하고, 그 기록들을 제공할 때 연구자와 국민들이 국가기록원을 새롭게 인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흩어져 있는 중요기록이나 역사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일제시기 이후의 공공기록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록을 국가기록원이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10년대 전반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호구조사 혹은 토지조사통하여 작성한 호구자료나 토지소유관계 일괄 자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편적으로 보관되고 있다. 호적은 보존기간이 80년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1990년대에 면사무소 등에서 폐기된 곳이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적부로 편철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국가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하였던 토지조사사업의 일괄자료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하거나 분실한 곳이 많지만, 일부의 경우 시청 지적과에서 그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러한 자료 현황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기획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일제시기의 수리조합 일괄문서들도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 혹은 민간기구에 산재해있는 역사기

기록물은, 법률에 정해 있는 국가지정기록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기록 및 역사기록을 수집하거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⁵⁾ 또한 전국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스캔하여 국민에게 기록포털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도사편찬'이나 '시사편찬'을 위해 지방 사료를 수집하였던 문화원 등에서 보존하던 자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방치하기 마련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산재해 있는 중요한 한국근현대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시기가 늦을수록 역사기록은 사라질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그 동안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해왔던 국사편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 여겨진다.⁶⁾

4.2 기록의 활용과 거버넌스

기록관의 기능이 과거에는 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초점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기록의 이용·활용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현재는 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수준이 기록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정도이다.

캐나다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과 기록관의 조직을 통합하여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기록관에서는 민간 사

료와 공공기록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박물관과 기록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김익한 2009, 414). 선진국의 기록관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각국의 기록관에서는 역사교사, 학생, 전문연구자, 일반인 등으로 수요자를 구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국립기록청(NARA), 영국의 국립기록청(TNA) 등에서는 수요자별로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록청(NARA)에서는 약 40개의 주제별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검색 열람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즉, 미국 행정조직변천사, 정부조직사, 인물전기, 기록관리, 정보관리 등 75,000개의 서지정보를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국 국립기록청(TNA)에서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31개의 온라인 전시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위해 방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Learning Curve). 호주 국립기록청(NAA)에서는 가족사, 내각기록, 국방관련기록, 연방정부기록, 외국관련기록 등 9개 분야의 컬렉션(Collection)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시리즈군별 열람안내서를 제공하거나 교육용 활용자료를 발간하기도 하였다.⁷⁾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용자의 수준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제43조~제46조. 법률 제정 이후 '국가지정기록물'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록원이 직무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4년 이후 "한국근현대자료 조사수집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한국근현대자료를 조사해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국사편찬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에 현존해있는 중요한 역사기록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및 요구에 맞게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도 '나라기록포털' '컬렉션' 소개 등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나라기록포털'로 제공하고 있고, 다른 한편 조선총독부기록물, 독립운동판결문, 국무회의관련 기록물, 지적관련 기록물,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등 11개의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록물의 군(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학생 등 수요자가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국가기록원 소장의 기록물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컬렉션에서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뿐 아니라 지적도 등의 기록을 제공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족보 등의 기록을 제공하는 것도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록을 제공하면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물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기록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기록의 30년 공개원칙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각종 전문영역의 아카이브들을 구축하여 기록정보를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학기술, 문화재, 영상 등의 전문 아카이브

를 설립하여 그들의 특별기록을 수집하여 정리·활용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

2009년 현재 공공기록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자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결재율이 2007년 기준으로 98.8%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⁸⁾ 이제 공공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전자기록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생산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RMS: Records Management System)의 기능을 고도화와 동시에 유관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전자서명장기검증시스템)에 연계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Migration)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자체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업무분류체계(BRM)나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료관시스템 규격은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 기록관리시스템(RMS)은 기존 전자문서시스템과 온

7)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종합실천계획」: 8.

8)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종합실천계획」: 3.

나라시스템의 규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관시스템의 자료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꼭 해야지만 이전 자료관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한 자료관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우선시되는 것보다 행정업무분류체계(BRM)을 기반으로 한 업무기록관리시스템이 확산 및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을 계속 해서 유지하는 것은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에서도 많은 보완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002년 전자적 업무처리를 의무화한 사무관리규정이 발효된 이래로 급속도로 전자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되어져 왔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왔는데,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여왔으며,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은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영원불멸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에 대비하기 위한 책무라는 대의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정보는 기관별로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소장 기록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함과 아울러,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메타데이터 및 기술정보

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송병호 2009).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원에 비하여 전자기록은 진본성이 중요한 품질 요건이 된다. 특히, 전자기록 생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증거로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의 기록 가치가 중요시 되므로, 진본성 요구 조건이 높아야 할 것이다. 신뢰할 만한 진본기록을 유지하고 차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의 법적효력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의 관련법으로는 진본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자기록이 업무활동의 증거이자 법적관계에서 증거로서 하자없이 생성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및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율할 수 있는 법제마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진본성을 추정하도록 하는 요건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이소연 2009).

진본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기관 즉, 보존소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신뢰성 있는 기록이란 믿을만한 보존소에서 믿을만한 사람에 의해 생산, 유지, 관리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믿을만한 보존소에서 생산된 기록은 그 기록의 증거력과 진본성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 보존소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록관리기관의 투명한 경영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기록관리 수준평

가(ISO 인증 등) 인증제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관리체제를 정립하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표준에는 국가표준, 공공표준, 기관표준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표준이란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관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록관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표준이 확립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는 국제표준을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표준을 만들어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6. 기록물관리기관의 활성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록 관리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발전은 국가기록원 및 중앙부처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지방의 기록관리로 확산시켜야 하며 나아가 민간기록관리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아카이브즈, 작은 아카이브즈들을 많이 설립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기록 관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⁹⁾

먼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및 중앙부처의 기록관리체계를 지방기록관리로 확산시켜가야 한다.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영구기록물을 관리·활용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적극 설립하여야 한다.

기록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단계 완성시킬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은 첫째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주민 참여 정치를 활성화시키며, 셋째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정보·지식을 축적하여 지역민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지수걸 2009, 270-27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단순히 지방의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방의 문화·역사를 관리 활용하는 지방문화기관으로 발전해가면서,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기관이자 협조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록을 관리하는 아카이브즈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록관리가 기록관리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기록관리의 영역이 확대 발전해가면서 우리나라 기록관리영역을 풍부히하고, 기록을 지식자원화하는 체계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기업, 종교단체, 대학 등에서 기록관을 설립하여 기록관리를 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업 가운데 포스코,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등에서 기록관을 설립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전승하기도 한다(김화경 2006; 최정애 2005; 고선미 2003). 앞으로 기업기록관의 기록을 통하여 기업 브랜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상업적 정체성을 세우며 사업 비밀의 노하우를 관리한다. 나아가 기업기록물은 적대적 소송,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에 의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카이브즈(Archives)’는 개인이나 조직이 사적 또는 공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 중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또는 관리시설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은 ‘아카이브즈(Archives)’를 포함하는 것이다.

상표 위반행위 또는 평판에 대한 비난에 대항할 증거를 제공한다(이정연 2009).

유럽 선진국의 기업 중 기업기록관리팀이 중심이 되어 기업기록을 바탕으로 기업홍보를 행하거나 제품마케팅을 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헤이글 기록관(Hagley Museum and Library)은 미국 듀퐁(Dupont)회사의 기록을 관리하고 전시함으로써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Fogerty 2004). 프랑스의 생고뱅(Saint - Gobain) 주식회사(1665년 설립)의 기록센터 조직팀은 중앙기록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기록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프랑스 경제·기업사 연구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및 교육적 역할을 행하기도 한다. 독일의 알리엔츠(Allianz) 보험회사는 기록관을 만들어 기업 홍보, 역사연구 자료 제공,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행한다(이정연 2009). 독일의 크래프트(Kraft) 식품회사는 기록관리팀의 기록을 제품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할수록 기업기록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종교단체에서도 기록관을 설립하여 역사적 기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의 조계사에서 조계종기록관을 설립하여 종단의 역사기록을 정리하고 전시하면서 조계종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신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곽정 2005). 기독교계에서도 신일교회, 정동교회 등에서 기록관을 설립하여 역사적 기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송현강 2006; 마원준 2004). 천주교계에서도 기록관을 설립하여 역사적 기록을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선미 2004).

대학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의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의 사립대학에서 기록관 혹은 역사기록관을 설립하여 대학의 역사적 기록을 정리하고 전시하면서 대학의 역사성과 사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손동유 2004),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의 국립대학에서도 기록관을 설립하여 대학기록 및 역사적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이주연 2008).

기업, 종교단체, 대학뿐 아니라 영화, 미술, 음악 등의 예술영역의 아카이브즈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과학기술, 건축도면, 병원, 신문, 방송, 노동, 여성, 정당 등의 아카이브즈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즈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consulting)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설립 방식, 운영 방법 등을 각 기관에게 안내해주어 아카이브즈를 실제 설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국가기록원과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즈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아카이브즈들이 설립되고, 그러한 아카이브즈들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록관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간다면 한국사회의 지식정보 자원은 한층 풍부해질 것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도 더욱 발전해갈 것이다.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록관에서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는 제일 먼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운영하는 전문적인 통합·중개·조정 역할을 하는 자이다.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부칙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¹⁰⁾

위 부칙에 기록된 사항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839개의 공공기관은 2011년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2월에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2007년 1월에 지방연구직공무원에 지방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¹¹⁾

국가기록원은 2005년 8월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기록연구사 45명을 선발하여 중앙부처에 배치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06년 16개 시도에 38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문요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3월까지 각급 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은 <표 2>와 같다(조이현 2009, 4).

<표 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기관	중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본부	소속	광역	기초* (15만이상)	기초* (15만미만)	광역	지역** (7만이상)	지역** (7만미만)		
기관수	44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배치 시한	기배치***	201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 비고: * 인구 기준 / ** 학생수 기준 / *** 방위사업청은 미배치.

※ 출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11) 2005년 2월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예 직군에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였다.

〈표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3월 현재)

구 분	중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본부	소속	광역시	기초 (15만이상)	기초 (15만미만)	광역시	지역 (7만이상)	지역 (7만미만)		
대상기관수	44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정원확보 기관수 (확보정원)	43 (48)	0 (0)	16 (23)	20 (20)	2 (2)	12 (13)	3 (3)	1 (1)	0 (0)	97 (110)
배치인원수	50	0	16	10	0	5	0	0	0	81

※ 출처: 조이현 (2009, 4)

〈표 2〉에서 보듯이 2009년 3월까지 중앙행정부처에는 50명, 광역자치단체는 16명, 기초자치단체에는 10명, 광역교육청에는 5명 총 81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시한을 넘긴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연한이 끝난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¹²⁾ 즉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폐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해야만 한다.

16개 광역시·도와 광역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행정부 중앙부처의 기록관에서는 기관장 및 관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인 경우, 종사자의 1/4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 기록물관리기관 중 큰 규모이거나, 혹은 중앙부처 중 많은 소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부처인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가 증대될 것이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현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5곳과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4곳은 각각 2명씩의 기록연구사가 근무하고 있다.

2009년 12월 초에는 〈표 3〉에서 보듯이, 중앙부처 49명, 광역자치단체 19명, 기초자치단체 52명, 광역교육청 10명, 기초교육청 2명 총 132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 올해 3월에 비하면 51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증가하였다. 올 12월에 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낸 공공기관이 86곳이나 되니, 앞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기를 경과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표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12월 7일 현재)

구 분	중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본부	소속	광역	기초 (15만이상)	기초 (15만미만)	광역	지역 (7만이상)	지역 (7만미만)		
대상기관수	45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배치기관수	44	-	15	47	5	9	1	1	-	122
배치인원수	49	0	19	47	5	10	1	1	0	132
채용 중 ¹³⁾	-	-	1	24	60	1	0	0	-	86

※ 출처: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12: 34-37.

채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해간다는 사실이다. 2008년 7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그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요원 채용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는 곳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가 심하며, 경기도 의정부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등이 그곳이다. 비전임 계약직이란 시간제 고용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권한도 없는 신분이 불안정한 직위이다.¹⁴⁾

비전임 계약직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업무에 전념하거나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현황을 파악한다든가, 기록물을 심의·폐기한다든가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비밀기록·비공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비전임 계약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비전임 계약직(시간제 근로)인 경우, 그들에게 기록물관리의 열정 및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성, 기관에의 소속감 등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기록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이영학 2009, 34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기관의 사정상 그것이 어려운 경우 전임 계약직으로 임명해야지, 비전임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경우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록물관리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시급히 배치

13) 채용 중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3, 부산 4, 인천 1, 광주 2, 울산 1, 경기 5, 강원 12, 충북 11, 충남 14, 전북 7, 전남 1, 경북 8, 경남 13, 제주 2, 광역교육청은 인천교육청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86명 중 기록연구사는 64명, 계약직은 22명이다(국가기록원 자료 참조).
 14)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는 반면에,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 업무권한이 없고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구 및 전문아카이브즈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지난 10년 동안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해왔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에 국가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면서 국가 기록관리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후 기존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대통령기록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 결과 국가기록원과 중앙부처에는 기록연구사가 배치되고 기록관이 설립되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아직도 기록관리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즉 ‘높은 단계의 제도화’는 이루어졌지만, 현실은 ‘낮은 수준의 기록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곽건홍 2009, 6). 즉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기록원이 정비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면서 기록관이 설립되었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는 경시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이다. 종이·필름·비디오·사진·구술·이메일·전자기록 등 표현 매체가 다양화하고 IT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각 기관은 정책이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밀려오는 ‘정보화의 홍수’를 거스

를 수는 없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이든 조직이든 유의미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기록관리정책을 집행할 때, 민간전문가·시민단체·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면서 정책을 수행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기록관리정책을 통괄하는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지닌 독자적 기관으로 자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치적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때 국가 기록관리는 바로 설 수 있다.

이제는 국가기록원 및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뿐 아니라 지방기록관리와 민간기록관리 영역이 발전해가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기록자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종교단체·대학뿐 아니라 영상·미술·음악·신문방송·과학기술·병원·여성·노동·정당 등의 아카이브즈들이 설립되어 각 분야의 기록을 관리·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아카이브즈, 작은 아카이브즈를 많이 설립하여 유의미한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지식정보자원은 한층 풍부해지고 넓어질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즈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아카이브즈,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고 나아가 그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

게 하여 기록관리의 전문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과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즈는 상하관계로 명령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유

지해야 한다. 각 분야의 아카이브즈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는 자율·분권·연대·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고선미. 2003. 포스코 보존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8: 96-136.

곽건홍. 2003.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역사비평사.

곽건홍. 2006.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3-40.

곽건홍.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 3-35.

곽 정. 2005. 조계종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1: 143-179.

국가기록원. 2008. 『기록물관리기관 공개관리매뉴얼 3』.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종합실천계획』.

김선미. 2004. 가톨릭 교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 인천교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77-201.

김익한. 2005. 기록관리혁신의 과제와 전망 - 거버넌스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1: 3- 14.

김익한. 2009. 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 『기록학연구』, 21: 413-429.

김화경. 2006. 기업 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마원준. 2004. 한국 개(個)교회기록물의 기능분류방안. 『기록학연구』, 10: 145-197.

손동유. 2004. 사립대 아카이브즈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9: 143-163.

송병호. 2009.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85-411.

송현강. 2006. 대전·충남 지역의 근현대 기독교 기록물현황과 기록관리실태. 『역사와담론』, 45: 125-162.

오향녕. 2005.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기록학연구』, 11: 15-40.

이경용. 2002.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 -1894~1969년-.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이상민. 2008.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기록학연구』, 18: 281-315.

이상훈. 2009.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1964년). 『기록학연구』, 21.

이소연. 2008. 전자기록의 속성에 기반한 기록관

- 리의 과제. 『기록학연구』, 18: 317-333.
- 이소연. 2009. 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학연구』, 21: 355-383.
- 이승일. 2007.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43-71.
- 이승휘.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업적'. 『기록학연구』, 18: 257-280.
- 이영학 외. 2006. 한국 근현대의 기록관리정책과 기록관리제도. 『제7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움 발제집』.
- 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23-353.
- 이영학. 2009.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393-426.
- 이원규. 2002.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 이정연. 2009. 세계 기업 및 지방기록관의 기록콘텐츠 구축현황 및 전망.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집』.
- 이주연. 2008. 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67-187.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 7.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7.
- 조민지. 2009.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13-256.
- 조이현.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 조영삼. 2009.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283-322.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247-281.
- 최정애. 2005.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Fogerty, James E. 2004. 광정 역. 미국의 기업 아카이브즈와 기업기록관리의 발전. 『기록학연구』, 9: 291-329.
- Lipchak, Andrew. 2002. Evidence-based Governance in the Electronic age: A Summary of Key Policy Issues. IRMT(오향녕. 2005.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기록학연구』, 11: 16쪽 재인용).

